

수원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0가단564730 판결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0가단564730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트 담당변호사 허규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변론종결	2022. 6. 8.
판결선고	2022. 8.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 71795 판결 참조).

나. 갑 제1 내지 4,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1. 4. 26.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0,000주를 발행주식 총수로 하고, 다만 주권은 발행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는 2020. 9. 17. 피고의 주주명부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3,000주의 주주로 등재된 D, 위 목록 제2항 기재 1,000주의 주주로 등재된 C로부터 위 각 보유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의 합계 2,000만 원으로 매수하고, C, D에게 위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③ 원고는 같은 날 C, D으로부터 주식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주식 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주였던 C,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피고의 주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주식양도로서 무효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C, D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1년 전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5만 원의 합계 30억 원으로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에 비추어, 그 1/150에 불과한 2,000만 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진정한 매매의사로 체결된 것이라 볼 수 없고, ② 만약 이 사건 주식을 2,000만 원으로 양도하였다면 C, D으로서는 위 주식 양도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금으로 이를 양도한 것이며, ③ 원고의 대표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피고의 기업 가치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업 가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주당 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참조).

나)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D이 2019. 6.경 이 사건 주식을 피고와 피고의 대표자 등에게 합계 30억 원의 대금으로 양도하는 것을 협의하였던 사실, 공개된 피고의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는 피고의 채무상환능력 우량하고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양호한 안정적인 회사라는 평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D은 피고 측으로부터 30억 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교섭에 응하였으나, 피고가 30억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C, D에게 피고의 이사회 소집 등 회사법상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피고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 피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등과 같은 다수의 금지사항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결국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의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피고의 시가총액이 기재되어 있거나 주식평가액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섭 당시 C, D이 제안받았던 위 30억 원은 이 사건 주식의 순수한 교환가치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30억 원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주식의 양도대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정하는 것이 미리 시장에서 평가된 가액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로 C, D에게 따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C, D이 양도소득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송신탁을 위한 주식양도로서 무효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원고가 2020. 9. 4. 설립되어 그로부터 불과 2주 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의 직원이었던 C는 E 등과 모의하여 피고의 영업자료를 유출하거나 피고 자체를 매각하려고 시도하다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발각된 적이 있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목적달성에 실패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C, D 및 원고는 피고에게 정관, 주주명부 제공 및 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하거나 법원에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소송절차를 진행한 점, ④ 원고의 대표자 F와 원고의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가 친인척 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C, D이 원고에게 주주권의 소송상 행사를 신탁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C가 피고의 영업자료를 유출하거나 E 등과 모의하여 피고 자체를 매각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주장과 원고의 대표자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친인척 관계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3124호로 퇴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0. 7. 20.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위 소송이 종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의 주주 지위와 직원으로서 퇴직금 청구가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과 C의 위 퇴직금 청구소송 사이에도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을 제9,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D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스스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던 C, D에게 주주권의 행사를 소송 상 신탁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관상 주식양도제한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회사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의 회사에 해당하는 피고는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였고, ② C가 위 정관을 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서에 주주로서 날인한 이상 위 정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③ C,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원고도 마찬가지로 C 등에게 위 주식양도의 제한규정을 들어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수 있고(상법 제335조 제1항),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위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하며(상법 제383조 제1항, 제4항),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2항). 한편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 2, 같은 조 제4항), 만일 이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37조 제1항).

나)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본금이 5,000만 원이고 이사로 G, H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의 정관 제12조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그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정관 규정과 같은 주식양도 제한사항을 등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주식양도 제한사항에 관하여 악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3. 3. 30. 당시 피고의 주주이자 감사로서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는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C가 위 정관규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일 수는 있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도 당연히 위와 같은 정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위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사항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승인이 없었음을 들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진

별 지

이 사건 주식의 목록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주주명 :

1주의 금액 : 금 5,000 원

주식수 : 3,000 주

2. 발행회사 : 주식회사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주주명 :

1주의 금액 : 금 5,000 원

주식수 : 1,000 주, 끝